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 소농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8년
나) 면적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수령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라. 법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4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마. 법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농지등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5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바. 법 제12조제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이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및 나머지 농지등분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2) 이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것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사. 법 제12조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농약을 이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산물의 생산단계의 잔류허용기준 및 농산물의유통·판매단계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2) 화학비료를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또는 비료량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아.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기본직접지불금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자. 법 제12조제4호 및 이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이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7호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 대상 농지 등분에 한정하여 기본 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카. 법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8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9호	해당 농지 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대국민 감시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공익직불금(농식품 보조금) 부정수급 경각심 강화 및 자정 능력 향상

1 (신고센터 운영) 농관원 및 지자체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

2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

- ① 해당 농관원, 시·군·구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또는 농관원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1334-내선 4번) 등을 통한 구두 신고
 - * 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및 관련 입증 서류를 첨부
-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 농관원은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등록하고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 구두신고 시 최소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 ③ 시·군·구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 조사
 - * 종전('19년 이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 포함된 건은 시·군·구가 농관원과 합동조사 실시
- ④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환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 * 농관원으로부터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장(처분권자)은 행정처분(환수, 등록제한 등) 실시 후 10일 이내 그 결과(처분일자, 처분종류, 환수금액 등)를 농관원으로 회신
- ⑤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신고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
- ⑥ 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를 농관원 지원에 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①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 ② 신고한 자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③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④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 ⑤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 ⑥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식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			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기관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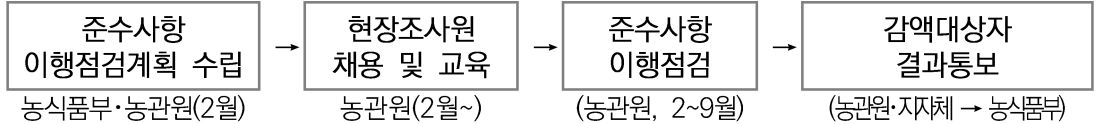
서식	의견제출서
-----------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환수 등 부과 통지서
-----------	--------------------

기본형 직불 부정수급(착오수급)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사무소 소재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부정수급 (착오수급) 금액(A)						원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B)						원
가산금 부과 금액(C)						원
환수금액 (A+B+C)						원
등록제한 기간	YYYY.MM.DD ~ YYYY.MM.DD(-년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분할납부 여부	여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납부기한	분할납부 기한			
			1차			
			2차			
			3차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p>「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또는 제11조)에 따라 0000년 00월 00일 (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귀하에게 지급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0000년 00월 00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20px;">직인</div> </div>						
<p>※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기본직불금 등록대상자에게 부여된 준수사항의 이행점검을 하여 농업인의 실천력 향상 및 미이행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① (점검계획 수립) 농관원, 지자체는 직전 연도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비점 개선,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사업연도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2월)

▽ 농관원은 농업인의 준수사항 실천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소관 점검 대상에 대하여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한 지침 마련,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

* 농관원이 주관하여 관리하는 준수사항은 개별 사업시행자침을 수립하여 농업인, 지자체 등에게 안내

▽ 지자체(시·군·구 주관)는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마을 단위로 관리하는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리계획(마을공동체 활동계획 등)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

- 아울러 타 법령에 근거한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 관련 부서에 (1)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직불금 감액 사전 안내, (2) 관련 법률 위반자 행정조사 등 협조 요청 등 사전 준비

② (현장조사원 채용 및 교육) 농관원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지원·사무소 여건에 맞게 현장 조사원을 사전에 채용하고 교육 추진

③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관원·지자체는 기본직불 등록자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

▽ 일반적인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직전 연도 10.1일부터 사업연도 9.30일까지

* 시료수거일 등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 다만 농업인의 실천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사전에 안내하기 위한 별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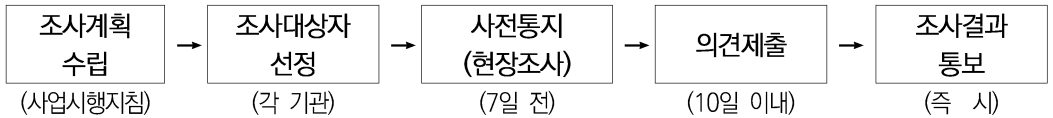
* (예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사전 모니터링) ~5월, (현장조사) 등록증발급 ~ 지급대상자 확정

-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은 이행점검 기간 중 상시점검체계 유지

▽ 전년도 감액처분을 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연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되 준수사항 이행점검 사전에 안내

▽ 준수사항의 이행점검 기관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참고 12)하고, 조사 결과 미이행 농업인이 확인되면 기본직불 감액 등 지급 제한 사전 안내



- 농관원은 조사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병합하여 조사 추진

* (사례) 준수사항(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 부정수급(실경작 여부 등)

▽ 지자체 소관 준수사항은 관련 법률 담당 부서의 협조(참고 13)를 받아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한 자 중 기본직불 등록자로 확인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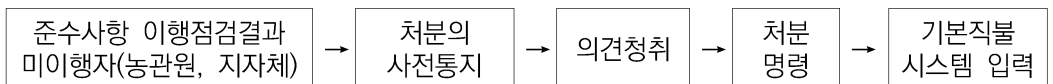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관에서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하여 읍·면·동에서 추가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안내

④ (감액대상자 결과 통보) 농식품부 주관으로 점검 및 확인하고, 지자체에서 기본 직불시스템으로 감액대상자 결과 통보

▽ 농관원, 지자체는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자로 확인된 경우 매년 9.30일 이전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필요한 경우 보고기한을 조정 가능)

- 농식품부는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검토 후 농업인별 준수사항 미이행자를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통보(~9.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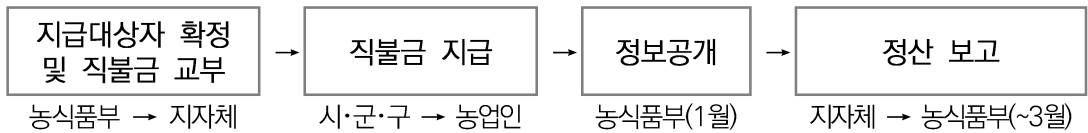
▽ 읍·면·동에서는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통보된 농업인(감액대상자)이 확인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참고 14)를 개시하여 감액 대상 및 감액률을 확정(~10.10일)



- 읍·면·동에서 행정절차 이후 결과 입력값에 따라 농업인별 지급금액 감액하여 지급명세서 제공

7 교부, 지급, 정산보고 등

- 가. 기본직불금은 지자체경상보조로 시도, 시군구에서 농업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국고보조사업(100%)으로 집행관리를 위하여 사전 준비 철저
- 나. 기본직불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조기에 교부(11월 → 10월중)하고 11월 중으로 각 시·군·구에서는 실집행을 완료



※ 예산편성절차, 정산 및 반환, 부정수급액 등 환수의 절차는 II-10의 내용을 참고

① (지급대상자 확정 및 교부) 농식품부는 농업외소득, 0.1ha 미만 등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에 대한 추가 자격요건 검증 후 지급 및 감액대상자를 확정

- ▽ 시·도, 시·군·구는 기본직불 등록대상자가 확정된 후 농식품부 가내시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
- ▽ 집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e나라도움-e호조(시·도, 시·군·구) 맵핑 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련 업무 절차 숙지
- ▽ 보조금 교부는 소농/면적직불금을 구분하여 관할지 읍·면·동에 속한 시·군·구 대상으로 배정·교부되며, 감액처리 등은 관할지에 속한 시·군·구에서 처리

- ▶ 소농직불 :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소재지 시·군·구
 -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 B군 200㎡ → 관할지 소재 A시 130만원
- ▶ 면적직불 : 지급대상 농지의 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
 -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0㎡, B군 2000㎡
 - 직불금 총액 1,200만원 중 관할지 소재 A시 1,000만원, B군 200만원(총액 * 면적비율 * 100%)
- ▶ 감액처리 및 적용 : 관할지 소재 A시에서 감액금액 전부를 제외하여 지급

②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서는 기본직불금이 11월까지 농업인에게 실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집행 추진

- ▽ 농식품부는 시·군·구 단위로 “e호조 집행명세서”의 형식으로 제공
 - * 일부 시·군·구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여 집행관리로 인하여 관할지를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행정편의 제공

* 지급금액의 10원 미만은 버림

관할지	거래처명	거래처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입금유형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공급가액	부가세액	공제액	지출액	지로번호	CMS번호	대표채주	대표자명	우편번호	가분주소	상세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입금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구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신속하게 지급대상자 계좌에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업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농림공익직불” 통장 명기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입금명세서를 지급대상 농업인에게 전달 가능

- ▽ 지급금액 확정 ~ 지급 전까지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시스템에 승계처리 후 직불금 지급
 - * 지급기간 중에는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수정 및 수정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③ (정보공개)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기본직불 수령자 정보를 관할 홈페이지, 마을회관 회보 등을 통해 15~30일 이내 정보를 공개

- *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구축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열람하러 가기’ 접속 방법을 팝업, 배너 링크, 마을회관 등 게시

-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등록/지급 관련 정보는 등록자/수령자 요청, 등록자/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④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기본직불금 지급이 완료 되면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3월 이전 농식품부 제출

- ▽ 시·도에서는 시·군·구로부터 기본직불 사업 및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e나라도움으로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내용을 검토한 후 보조금 확정

⑤ (반납) 시·도는 시·군·구의 집행잔액, 이자 등을 모두 반납받으면 농식품부에 “OO회계연도 기본직불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보고”(문서처리)하고 e나라도움으로 반납(e호조 → e나라도움)

- ▽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다음 해에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 공익직불법 제19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 직불금 신청·수령 등을 위해 정당하게 지급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

⑥ (환수금, 부정수급액 등 반납) 직불금 지급 이후 착오지급, 부정수급 적발 등으로 지급한 직불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반납 등이 발생한 경우 공익직불기금에 반납

▽ 농업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된 직불금 전액(부정수급액)을 환수하되 착오 지급된 경우 착오 지급한 금액(환수금)을 환수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부정수급액) "경작사실확인서" 등 허위서류 제출, 양도세 목적으로 다년간 대리 경작하게 하고 직불금 수령, 불법 전대 행위 적발, 영농종사를 할 수 없는 땅(건축물, 공원, 저수지 등)을 등록하여 지급 받은 경우 등

* (착오지급)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등), 임대차계약 종료, 행정기관의 착오 등

- 환수대상 및 환수금 산정 기준은 위반사항 또는 착오지급사항에 대하여 자격요건 미충족, 법률 위반행위, 필지 기준

● 환수 대상 구분 ●

▶ 부정수급(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농업인 자격요건 미충족, 법률 위반행위, 영농종사를 할 수 없는 땅을 등록하여 지급받은 필지

▶ 착오 지급 : 자격요건 미충족, 착오의 발생으로 잘못 지급된 필지

● 부정수급액, 환수금 산정 기준 ●

▶ 전체 : 자격요건 미충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 부분(필지 기준) : 위반행위 또는 착오지급된 해당 농지면적(논·밭, 진흥/비진흥) 1구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환수대상 농지면적이 2ha을 초과할 경우 2구간 단가를 단계적으로 적용

▶ 제외 : 소농의 경우 착오 등으로 확인된 농지면적을 제외하더라도 소농 면적 요건(0.1ha-0.5ha)을 충족 하는 경우 환수 미 실시

- 제재부가금은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3배/5배 부과

▽ 시·군·구는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 및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수시)

▽ 시·군·구에서 환수금,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을 반납할 때 농협경제지주(양곡부, 문서24 수신처)에 문서로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하여 납부 후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 시군구에서는 환수금,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등을 공익직불기금에 반납하고자 할 경우 반납받은 연도 내에 추경 등을 통해 지출예산 편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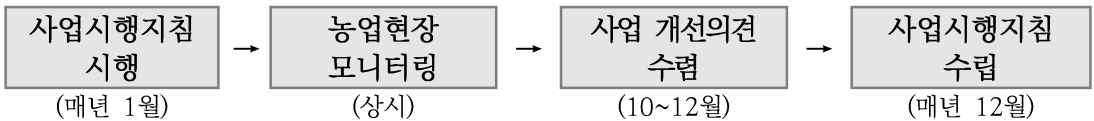
기본형 공익직불	301-0286-2693-51	친환경농업직불	301-0286-2705-71
경관보전직불	301-0286-2724-21	전략작물(논이모작)	301-0286-2731-61
쌀변동직불금	001-01-322590	쌀고정, 밭직불 등	농특회계(구조조정)

IV 평가 및 환류



- 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본직불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개선 추진
- 나.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된 후 농관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 개정,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발굴을 위하여 농식품부, 농관원, 시·도(시·군·구) 업무담당자의 정기·수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종료 전 업무관련자의 지침개선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관리체계 개선



- ▽ (사업관리반 구성) 기본직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부 주관 농관원, 지자체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업관리반 구성·운영하여 소통 추진(2월~)
 - 농식품부는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관리반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집합 점검회의를 기본으로 하나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영상회의 등 대체
 - * (주관) 농식품부, 농관원, 시도, (운영시기) 사업시행지침 수립~사업 완료, 정기(매월), 수시, (주요 내용) 기본직불 업무담당자 교육, 지침 개선의견수렴, 현장 문제점 및 애로사항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농관원-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운영, 합동점검 등



- ▽ (지침 및 시스템 개선) 사업시행지침 수립하기 전 농관원,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정하고 실사용자 중심 시스템 구성 추진
 -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개정
 - * 지침 개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기본직불 연착륙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
 - 실사용자 중심(읍·면·동 담당)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축하고, 도상점검 등을 통해 보완 추진

CHAPTER 2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침



